

'93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 토 보 고

1994. 10.

내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목 차

I. 결 산 현 황	313
1. 세입결산 총괄	314
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316
3.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321
II. 소관별 세출결산	322
1. 내무국 소관	323
2. 민방위국 소관	331
3. 소방본부소관	334
4. 공무원교육원 소관	338
5. 도민교육원 소관	341
6. 증명출장소 소관	344
III. 예 비 비 지 출	351

I . 결 산 현 황

1. 세입 결산 총괄
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3.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총괄

I . 결 산 현 황

1. 세입결산 총괄

(단 위 : 백 만 원)

회 계 별	예 산 액 (1)	징 결 수 액 (2)	수 납 액 (3)	비 율		불 납 결 수 액	미수납액
				1 : 3	2 : 3		
합 계	582,702	640,245	617,587	106.0	96.3	349	22,309
일 반 회 계	344,136	406,140	384,925	111.9	94.8	349	20,866
특 별 회 계	238,566	234,105	232,662	97.5	99.4	-	1,443
○ 공 기 업	71,338	66,977	65,534	91.9	99.4	-	1,443
- 공영개발사업	74,731	75,794	75,794	101.4	100	-	-
- 지역개발기금	1,069	958	958	89.4	100	-	-
○ 중 기 관 리	2,248	2,679	2,679	119.2	100	-	-
○ 주 택 사 업	12,058	12,063	12,063	100.0	100	-	-
○ 새 마을 소 득	112	114	114	101.8	100	-	-
○ 공 유 립 관 리	957	1,014	1,014	105.9	100	-	-
○ 지 방 양 여 금 리	70,758	69,208	69,208	97.8	100	-	-
○ 농 어 촌 장 기 개	3,000	3,000	3,000	100.0	100	-	-
○ 대 청 댐 대 책	2,294	2,297	2,297	100.2	100	-	-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582,702백만원에 대하여 106.0%에 해당하는 640,244백만이 징수결정 되었음.
- 예산보다 초과징수 결정된 57,543백만원은 일반회계가 118.0%인 62,004백만원 특별회계에서는 예산보다 4,461백만원이 적게 징수결정되었음.
- 미수납액 22,309백만원은 일반회계가 93.5%인 20,866백만원 특별회계가 1,443백만원으로 6.5%임.
- 불납결손액 349백만원 내역은 일반회계가 34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음.

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가.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1)	장 결 정 액 (2)	수 납 액 (3)	비 율			불 납 손액 (4)	미수납액
				1 : 3	2 : 3	2 : 3		
합 계	344,136	406,140	384,925	118.0	111.9	94.8	349	20,866
지 방 세	95,694	153,136	133,775	160.0	139.8	87.4	335	19,026
세 외 수 입	74,467	79,097	77,243	106.2	103.7	97.7	14	1,840
○ 재산임대수입	74	138	122	185.0	164.1	88.7	-	16
○ 사용료수입	3,241	2,845	2,792	87.8	86.1	98.1	-	53
○ 수수료수입	575	820	820	142.7	142.7	100.0	-	-
○ 사업장수입	752	789	789	104.9	104.9	100.0	-	-
○ 이자수입	1,651	2,503	2,503	151.6	151.6	100.0	-	-
○ 재산매각수입	938	1,180	1,154	125.8	123.0	97.0	-	26
○ 이월금	56,816	56,816	56,816	100.0	100.0	100.0	-	-
○ 부담금	6,051	6,533	6,410	108.0	105.9	98.1	-	123
○ 잡수입	4,270	6,748	5,626	158.0	131.8	83.4	-	1,121
○ 과년도수입	100	728	212	727.5	211.5	29.1	14	502
지방교부금	97,182	97,132	97,132	99.9	99.9	100.0	-	-
보 조 금	76,793	76,775	76,775	99.9	99.9	100.0	-	-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44,136백만원에 대하여 118.0%에 해당하는 406,140백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 예산보다 초과징수 결정된 62,004백만원의 내역은
 지방세의 세원발굴등으로 57,442백만원과
 세외수입에서 4,630백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음은 이자수입에서 852백만원,
 잡수입에서 2,478백만원을 초과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징수결정된 406,140백만원중 94.8%에 해당하는 384,925백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21,215백만원 중 결손처분된 349백만원을 제외한 20,866백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음.

· 지방세	19,026백만원
· 세외수입	1,840백만원

○ 일반회계의 결손처분액 349백만원은

지방세가 335백만원으로 세원별 내역은

— 위득세	11백만원
— 면허세	3백만원
— 소방공동시설세	4백만원
— 과년도수입	317백만원 이며,

불납 결손 사유는

— 행방불명	80백만원 (22.9%)
— 시효소멸	45백만원 (12.8%)
— 무재산	219백만원 (62.7%)
— 기타	6백만원 (1.6%)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외수입 14백만원은 도로사용료 및 과년도사용료 수입으로서 시효소멸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되어 불납결손처분한 것으로 사료됨.

○ 미수납액 20,866백만원은 징수결정액의 5.1%로서 그 사유는

행 방 불 명	120백만원 (0.6%)
징 수 유 예	995백만원 (4.7%)
채무자재력부족	1,772백만원 (8.5%)
납세자태만	1,778백만원 (8.5%)
재 산 압 류	14,964백만원 (71.7%)
기 타	1,237백만원 (6.0%)

재산압류, 납세자태만, 채무자 재력부족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93세입결산은 예산액보다 18.0% 상회하는 징수결정을 하였고 94.8%의 수납 실적을 거양함으로써 차질없는 세입확보를 가하였다 하겠습.

나.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1)	장 결 정 액 (2)	수 납 액 (3)	비 율			불 납 액 (4)	미수납액 (5) (2-3-4)
				1 : 3	2 : 3	2 : 3		
합 계	238,565	234,104	232,662	98.1	97.1	99.4		1,443
○ 공영개발 사 업	71,338	66,977	65,534	93.9	91.9	97.8		1,443
○ 지역개발 기 금	74,731	75,794	75,794	101.4	101.4	100		
○ 도로보수 충기 관리	1,069	98	98	89.6	89.6	100		
○ 주택사업	2,248	2,679	2,679	119.2	119.2	100		
○ 의료보호 기 금	12,058	12,063	12,063	100.0	100.0	100		
○ 새마을 소득 지원	112	114	114	101.8	101.8	100		
○ 공 유 립 관 리	957	1,014	1,014	105.9	105.9	100		
○ 지방양여 금 관리	70,758	69,208	69,208	97.8	97.8	100		
○ 농 어 촌 소득 개발	3,000	3,000	3,000	100.0	100.0	100		
○ 대 청 호 대 책	2,294	2,297	2,297	100.2	100.2	100		

○ 공영개발사업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38,565백만원에 대하여 98.1%에 해당하는 234,104백만원이 징수결정되었는바 그 내용은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064백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432백만원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백만원
·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2백만원
· 공유림관리특별회계	57백만원
· 대청호대책특별회계	4백만원이 초과 징수결정된 반면
· 공영개발사업 및 중기운영관리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액에 미달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음.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361백만원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12백만원
-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1,550백만원

○ 징수결정된 234,104백만원중 99.4% 해당액인 232,662백만원을 수납하였고 1,443백만원이 미수되었는바

○ 이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66,977백만원에 대하여 65,534백만원 (97.8%)을 징수하고 1,443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미수납 사유는 2지구 택지 매출 미수금임.

3.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78,984	71,008	4,293	3,683
일 반 회 계	소 계	77,410	69,541	4,241	3,628
	내무국 소관	43,651	42,011	96	1,544
	민바위국소관	1,568	1,531	-	37
	소 방 본 부	13,382	10,336	1,726	1,320
	공무원교육원	1,188	982	124	82
	도민 교육원	1,759	1,657	-	102
	중평 출장소	15,862	13,024	2,295	543
특별 회 계	소 계	1,574	1,467	52	55
	내무국소관 (새마을소득지원)	112	57	-	55
	중평출장소 (지방양여금관)	1,462	1,410	52	-

Ⅱ . 소 관 별 세 출 결 산

1. 내무국 소관
2. 민방위국 소관
3. 소방본부 소관
4. 공무원교육원 소관
5. 도민교육원 소관
6. 증명출장소 소관

1 . 내 무 국 소 관

1. 내 무 국 소 관

가. 세 출 총 괄

(단 위 : 백 만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43,763	42,068	96	1,599
일 반 회 계	소 계	43,651	42,011	96	1,544
	총무인사행정	7,040	6,325	-	715
	문서통신관리	405	365	-	40
	시군행정운영	375	358	-	17
	새마을사업	7,673	7,574	46	53
	지역개발	6,688	6,636	50	2
	문화예술진흥	4,903	4,837	-	66
	문화재관리	4,674	4,635	-	39
	체육진흥관리	4,002	3,944	-	58
	일반사회교육	70	66	-	4
	수입관리	2,199	2,092	-	107
	회계관리	319	287	-	32
	재산관리	5,284	4,873	-	411
	지적관리	19	19	-	-
	특별 회 계	소 계	112	57	-
새마을소득지원		112	57	-	55

· 내무국소관의 총예산현액은 437억6천3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36억5천1백만원 (99.7%)이며, 특별회계가 1억1천2백만원(0.3%)임.

· 총예산현액에서 420억6천8백만원이 지출되고 9천6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현액의 3.7%인 15억9천9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 총무인사 행정분야에 있어서

내무국소관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인 436억5천1백만원과 대비해 불배 16.1%인 70억4천만원 규모로 89.8%인 63억2천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0.2%인 7억1천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불용액 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6억3천4백만원
- 예산절감액 4백만원
- 계획변경취소분 7천7백만원 으로서

이는 인건비 및 계수당등과, 특별판공비의 계획변경취소분 및 예산절감액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은 없으나 '92결산시 불용액 4억5천4백만원과 대비해 불배 상당한 수준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당초예산편성시 좀 더 면밀한 수요판단이 요구 된다 할 것임.

○ 문서통신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총예산현액 대비 0.9%인 4억5백만원 규모로 90.1%인 3억6천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9.9%인 4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이 4천만원으로 이는 자산취득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타수당, 공공요금,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등의 집행잔액으로 이견이 없음.

○ 시·군 행정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0.8%인 3억7천5백만원 규모로 95.5%인 3억5천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4.5%인 1천7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바

· 불용액 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2백만원
- 예산집행사유미발생 8백만원
- 계획변경취소분 7백만원 으로서

이는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의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경상사업비 보상금에 있어 계획변경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액의 88.2%를 차지하고 있는바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 새마을 사업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17.6%인 76억7천3백만원 규모로 98.7%인 75억7천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0.6%인 4천6백만원은 자연학습원 창고 및 강당증축공사에 있어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 이월분이며, 0.7%인 5천3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 불용액 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3천만원
- 예산집행사유미발생 1천만원
- 계획변경취소분 1천3백만원 으로서

인건비 및 수용비 및 수수료와 보상금과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등의 집행잔액과 기타수당 및 임차료 물품구입비 등의 계획외 취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서 이점은 없으나 향후 예산편성시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총예산현액 대비 15.3%인 66억8천8백만원 규모로 99.2%인 66억3천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0.7%인 5천만원은 미암진입로포장공사의 2건의 공사비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익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0.1%인 2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주요사업 시설비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잔액으로서 이점이 없음.

○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있어서는

총예산현액 대비 11.2%인 49억3백만원 규모로 98.6%인 48억3천7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4%인 6천6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5천1백만원

- 예산집행사유미발생 1백만원

- 계획변경취소분 1천4백만원 으로

보상금 및 수용비수수료의 집행잔액과 경상사업 민간에 대한 위탁금의 계획변경에 의한 불용액으로 예산편성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재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총예산현액 대비 10.7%인 46억7천4백만원 규모로 99.1%인 46억3천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0.9%인 3천9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6백만원

- 예산절감액 1천3백만원

- 계획변경취소 2천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및 계수당과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이점은 없으나 예산 편성에 부수되는 상황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체육진흥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총예산현액 대비 9.1%인 40억2백만원 규모로 98.5%인 39억4천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5%인 5천8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5천7백만원
- 계획변경취소 1백만원 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보상금의 집행잔액 및 계획변경취소분으로 이권이 없음.

○ 일반사회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총예산현액 대비 0.1%인 7천만원 규모로서 94.2%인 6천6백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5.8%인 4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는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예산집행잔액 4백만원으로서 이권이 없음.

○ 수입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총예산현액 대비 5.0%인 21억9천9백만원 규모로 95.1%인 20억9천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4.9%인 1억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불용처리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1억6백만원
- 예산절감액 1백만원 으로서

인건비 및 계수당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이권은 없으나 당초예산편성시 적정예산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요액 판단에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회계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총예산현액 대비 0.7%인 3억1천9백만원 규모로 89.9%인 2억8천7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0.1%인 3천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불용처리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3천4백만원 으로

관서운영경비의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차후 세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됨.

○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총예산현액 대비 12.1%인 52억8천4백만원 규모로 92.2%인 48억7천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7.8%인 4억1천1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는 예산집행잔액이 4억1천1백만원으로서 출연금 6백만원, 토지매입비 2천만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 3천7백만원, 주요사업 시설비 3억2천2백만원, 대수선비 1천4백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당초예산편성시 사업성격의 정확한 판단과 계상으로 과다채정사태가 없도록 하는등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 지적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총예산현액 대비 0.04%인 1천9백만원 규모로 집행잔액은 없음.

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 내무국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인 1억1천2백만원중 50.8%인 5천7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49.2%인 5천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처리 원인은

주요사업비의 자치단체에 대한 용자금의 계획변경 취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불용처리 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2. 민방위국소관

2. 민 방 위 국 소 관

가. 세 출 총 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1,568	1,531	-	37
민 방 위 관 리	1,452	1,419	-	33
비 상 대 책	49	8	-	1
지 역 안 정	67	64	-	3

- 민방위국소관의 예산현액 15억6천8백만원중 97.6%인 15억3천1백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없으며 2.4%인 3천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나. 세 출 결 산

- 민방위국소관 총예산현액 15억6천8백만원중 2.4%인 3천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는 예산집행잔액으로서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민방위관리비에 있어

예산현액 15억6천8백만원 대비 92.6%인 14억5천2백만원중 2.1%인 3천3백만원,

비상대책비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3.1%인 4천9백만원중 0.06%인 1백만원

지역안정비에서는

예산현액대비 4.3%인 6천7백만원중 0.2%인 3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음.

○ 이를 세분하여 보면

민방위 관리비 불용액 3천3백만원중

- 민방위 운영관리 1천7백만원
- 민방위 시설장비 1천만원
- 민방위 교육훈련비 6백만원 으로

잔액 집행잔액 인바, 이는 인건비 및 계수당, 항공요금 등의 집행잔액과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와 민방위교육훈련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이며

비상대책비에 있어서는 불용액 1백만원중

- 비상대비업무 1백만원 으로

이는 수용비 및 수수료 및 기타제경비 등의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이며

지역안정비에 있어서는 불용액 3백만원중

- 방범활동 3백만원 으로

인건비 및 기타수당등의 잔액으로서 이전이 없음.

3. 소방본부소관

3. 소 방 본 부 소 관

가. 세 출 총 괄

(단 위 : 백 만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13,382	10,336	1,726	1,320
소 방 행 정 관 리	1,456	1,410	-	46
방 호 관 리	376	311	-	65
소 방 시 설 장 비 관 리	2,489	975	1,407	107
청 주 소 방 관 서 운 영	4,004	3,558	45	401
충 주 소 방 관 서 운 영	2,276	1,993	20	263
제 천 소 방 관 서 운 영	1,619	1,181	254	184
영 동 소 방 관 서 운 영	1,162	908	-	254

- 소방본부소관의 총예산현액 133억8천2백만원중 77.2%인 103억3천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2.9%인 17억2천6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9%인 13억2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나. 세 출 결 산

- 소방본부소관 총예산현액 133억8천2백만원 중 9.9%인 13억2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바,

이는 전액 예산집행잔액으로서

불용발생 내역으로는

- 소방행정 관리비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10.9%인 14억5천6백만원중 3.2%인 4천6백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및 계수당등의 집행잔액으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방호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2.8%인 3억7천6백만원 중 17.3%인 6천5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바, 이는 의용소방대원 사고발생시 지급되는 재해보상금 성격의 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이 없음.

- 소방시설장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대비 18.6%인 24억8천9백만원 중 56.5%인 14억7백만원이 증평소방서 신축의 2건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있어 신축부지확보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에 의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3%인 1억7백만원으로 이는 관서운영에 관련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과 주요사업비의 물품구입비 및 대수선비의 집행잔액으로서 이중 물품구입비의 불용액이 76.6%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에서 온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채정시 보다 신중한 계획수립이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됨.

- 청주소방관서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현액대비 29.9%인 40억4백만원중 1.1%인 4천5백만원이 사리소방차고 신축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신축부지 확보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에 의해 사고이월 되었으며 10.0%인 4억1백만원은 인건비 및 계수당과 제세공과금, 보상금, 대수선비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인건비에 있어서의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은 인력수급판단에 부적절한 면모로서 차후 시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 충주소방관서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현액대비 17.0%인 22억7백6 원중 0.9%인 2천만원이 금가소방차고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신축부지 확보지연 및 공기부족에 의한 사고이월분이며 11.6%인 2억6천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이 또한 청주소방서와 같은 맥락으로 인건비등 계수당에 있어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차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천시방관서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현액대비 12.1%인 16억1천9백만원중 15.7%인 2억5천4백만원이 봉양소방차고 신축공사시설비 및 공사부대비로서 신축부지확보지연 및 공기부족에 의한 사고이월분이며 11.4%인 1억8천4백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인건비등 계수당의 집행잔액이 주원인이며,

- 영동소방관서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현액대비 8.7%인 11억6천2백만원 중 21.9%인 2억5천4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바, 이중 62.6%가 인건비 및 계수당등의 집행잔액으로

전체적으로 불태 소방본부소관 불용액 13억2천만원 중 55.0%인 7억2천6백만원이 인건비의 집행잔액으로서 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책정한데 기인한것으로 부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었다 할 수 있겠음.

4. 공무원 교육원 소관

4. 공무원교육원소관

가. 세출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1,188	982	124	82
교무관리	1,023	839	124	60
교관관리	55	53	-	2
교학관리	110	90	-	20

- 공무원교육원소관의 총예산현액 11억8천8백만원 규모중 82.7%인 9억8천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10.4%인 1억2천4백만원이며 6.9%인 8천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나. 세출예산

- 공무원교육원소관 총예산현액 대비 6.9%인 8천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예산집행잔액 6천4백만원, 예산절감액 1천5백만원, 계획변경취소 3백만원으로서 거의 대부분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들로 사료되기에 이점이 없음.
- 이를 세분하여 보면
 - 교무관리 분야에 있어서
 - 총예산현액 11억8천8백만원 대비 86.1%인 10억2천3백만원 규모로 82.0%인 8억3천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2.1%인 1억2천4백만원이 공무원교육원청사 신속설계용역비로서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으며 5.9%인 6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 인건비 1천1백만원
- 관서운영비 9백만원
- 기본경상비 2백만원
- 주요사업비 3천8백만원 으로

이는 예산집행잔액이 5천5백만원, 예산절감액 3백만원, 계획변경취소 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 교관관리에 있어서는

총예산현액 대비 4.6%인 5천5백만원 규모로 96.3%인 5천3백만원이 지출 되었고, 3.7%인 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는 기본경상비 기타수당 및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예산집행잔액 2백만원 으로 이점이 없음.

○ 교학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총예산현액 대비 9.3%인 1억1천만원 규모로 81.8%인 9천만원이 지출 되었고, 18.2%인 2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이는 기타수당 및 임차료 등의 예산절감액과 보상금 및 물품구입비 등의 집행잔액 에 기인한 것으로서 예산집행잔액 8백만원, 예산절감액 1천2백만원으로 이점이 없음.

5. 도 민 교 육 원 소 관

5. 도 민 교 육 원 소 관

가. 세 출 총 괄

(단 위 : 백 만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1,759	1,657	-	102
서 무 관 리	1,440	1,356	-	84
새 마 을 교 육	160	146	-	14
농 민 교 육	159	155	-	4

- 도민교육원소관의 총예산현액 17억5천9백만원 규모중 94.2%인 16억5천7백만원이 지출되었고 5.8%인 1억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나. 세 출 예 산

- 도민교육원소관의 총예산현액 대비 5.8%인 1억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 이를 세분하여 보면

서무관리 분야에 있어서

총예산현액 17억5천9백만원 중 81.9%인 14억4천만원 규모로 94.1%인 13억5천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5.9%인 8천4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인건비의 급여 및 수당등 3천4백만원, 관서운영의 복리후생비 및 공공요금, 연료비등 3천만원, 자산취득비등 9백만원, 주요사업시설비 1천1백만원으로 수급관리 에 면밀한 검토와 적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새마을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대비 9.1%인 1억6천만원 규모로 이중 91.3%인 1억4천6백만원이 지출
되었고 8.7%인 1천4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바
이는 기타수당 및 보상금의 집행잔액으로 이점이 없음.

농민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대비 9.0%인 1억5천9백만원 규모로 이중 97.5%인 1억5천5백만원이 지출
되었고 12.5%인 4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는 주요사업 시설비, 자산취득
비, 보조금잔액 등으로 이점이 없음.

6. 증 평 출 장 소 소 관

6. 증 평 출 장 소 소 관

가. 세 출 예 산

(단 위 : 백 만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17,324	14,434	2,347	543	
일 반 회 계	소 계	15,862	13,024	2,295	543
	일반행정비	4,988	4,686	-	302
	사회복지비	4,279	3,046	1,133	100
	산업경제비	1,143	1,128	-	15
	지역개발비	4,364	3,891	366	107
	문화체육비	1,058	246	796	16
	민방위비	30	27	-	3
	특별회계	1,462	1,410	52	-
지방양여금리	1,462	1,410	52	-	

- 증평출장소 소관의 총 예산현액은 173억2천4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8억6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14억6천2백만원규모임.
- 총예산현액에서 83.3%인 144억3천4백만원이 지출되고 13.5%인 23억4천7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2%인 5억4천3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58억6천2백만원 대비 31.4%인 49억8천8백원 규모로 현액의 93.9%인 46억8천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6.1%인 3억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2억원
- 계획변경취소 1억원
- 예산집행사유미발생액 2백만원 으로서

이는 각급 인건비 및 계수당 등과 복리후생비, 출연금, 토지매입비 등이 과다 책정된바 금후 예산책정시 면밀히 분석하는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복지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26.9%인 49억7천9백만원 규모로 현액의 71.2%인 30억4천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21.5%가 이월된 11억3천3백만원 중 광덕리 간이 급수시설 대상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인해 위치재선정 후 시설하고자 8천4백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 이월액은 10억4천9백만원으로 증명보건의소신축에 따른 설계공기부족으로 인해 1억9천1백만원, 간이급수시설 설치 위치선정지연으로 인해 1천5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의 1건의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8억4천3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2.3%인 1억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6천9백만원
- 계획변경취소 6백만원

- 예산집행사유미발생 2백만원
- 보조금집행잔액 2천3백만원 으로

이는 각급 인건비, 구료급량비,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등의 집행잔액으로 예산의 과다책정 사례로 인원관리 및 수요판단에 적정성을 기하여 예산책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7.2%인 11억4천3백만원 규모로 현액의 98.7%인 11억2천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3%인 1천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1천만원
- 계획변경취소 1백만원
- 예산집행사유미발생 1백만원
- 보조금집행잔액 3백만원 으로

이는 물품구입비, 재료비 기타, 시설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등에서 발생한 잔액으로서 이견 없음.

○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27.5%인 43억6천4백만원 규모로 현액의 89.2%인 38억9천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8.4%인 3억6천6백만원 중 도시계획재정비지적고시 1억7천2백만원, 창동가로축조공사의 1건 4천4백만원, 시가지 하수도 개량 침수지역 사업비 2천8백만원, 신청안교 접속 위험도로 공사비 1천6백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3백만원, 보강천 맑은물 흐르기 사업비 5천5백만원, 초중하수

도 정비공사비 4천8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2.4%인 1억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1억6백만원
- 계획변경취소 1백만원 으로

이는 인건비 및 주요사업 용역비, 시설비 등에의해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이견은 없으나 신중한 사업내역 검토로 과다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책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체육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6.7%인 10억5천8백만원 규모로 현액의 23.3%인 2억4천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75.2%인 7억9천6백만원 중 중평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 당초계획에 대해 재무부의 매각 불승인으로 건립예정지를 바꾸어 건립하고자 7억8천5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남하리 3층석탑지표조사 및 주변정리사업의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1천1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5%인 1천6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1천6백만원 으로

문화예술진흥비의 공공요금 및 재료비 기타 등과 교육비의 유아교육비 및 출연금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이견이 없음.

○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0.2 %인 3천만원 규모로 현액의 90.0%인 2천7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10.0%인 3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액 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3백만원 으로

이는 민방위 운영관리 보상금과 비상대비훈련 참가자 급식비 및 보상금 등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민방위관련업무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서 이견이 없음.

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 증명출장소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인 14억6천2백만원 중 96.4%인 14억1천만원이 지출되었고 3.6%인 5천2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불용액은 없음.

·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 | | |
|-----------------------|--------|
| - 군도정비사업, 토지보상금 미수령 | 2백만원 |
| -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토지보상금 미수령 | 1백만원 |
| - 초중리하수공사 | 5천만원 이 |

사고이월된 것으로 이견이 없음.

III. 예 비 비 지 출

Ⅲ. 예 비 비 지 출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불용액	처 리 일 자	
					승인및결정	지출일자
내 무 국	보 상 금	41,561,000	41,560,200	800	'93. 2. 26.	'93. 3. 9.
	연금지급금	39,818,000	39,818,000	0	'93.11.17.	'93.11.23.

공무원연금법 제61조2항 및 제65조2항에 의한 유족보상비로 8천1백3십7만8천2백원이 지출 되었으며 이견이 없음.

참 조

< 공무원 연금법 >

제61조 (유족보상금) ①공무원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①제1항의 유족보상금의 금액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보수월액의 36 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5조 (비용부담의 원규) ① 생략

②제34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공무상의 질병, 부상,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개정 87.11.28 >